

# 제2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 및 회사 정관 제19조에 의거하여 제27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6년 03월 26일 (목) 오전 11:00
2. 장 소 : 경상북도 구미시 4공단로 321, 아주스틸 본사 사무동 3층
3. 회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1) 감사보고
- 2) 영업보고
- 3)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 4)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부의안건

- 1) 제 1호 의안 : 제 27기(2025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별도/연결)
- 2) 제 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 2-1호 의안 : 상법 개정에 따른 정관 변경
  - 제 2-2호 의안 : 이사회 소집 관련 조문 정비
- 3) 제 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4) 제 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4.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제 368조의 4에 근거하여, 주주님께서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도를 활용하기로 결의하였으며, 관련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일정상 주주총회에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서는 주주총회일 전까지 전자투표를 활용하여 귀중한 의결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전자투표시스템

- 인터넷/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나. 전자투표 참여기간 : 2026년 03월 16일 오전 9시 ~ 2026년 03월 25일 오후 5시

- 투표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 (단, 마지막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다. 본인 인증 방법

- 공동인증, 카카오톡인증,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행사

#####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 처리

####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가. 직접행사 : 신분증

- ※ 본인 신분증 미지참시 주주총회장 입장이 불가하오니 유의 바랍니다.

##### 나. 대리행사 : 위임장(원본), 대리인의 신분증

- ※ 위임장 필수 정보

- 위임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 대리인 : 성명, 생년월일,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
- 위임인의 날인 또는 서명
- 위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주주총회장 입장이 불가하오니 유의 바랍니다.

#### 6. 기타 참고사항

-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1주전까지 금융감독원(<http://dart.fss.or.kr>) 및 당사 홈페이지(<http://www.ajusteel.com>)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2026년 03월 11일

**아주스틸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현 식 (직인생략)**

[첨부1] 부의사항 상세내역

제1호 의안 : 제27기(2025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별도/연결)

※ 재무제표와 관련된 사항은 금융감독원(<http://dart.fss.or.kr>) 및 당사 홈페이지(<http://www.ajusteel.com>)의 '주주총회 소집공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구분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2-1호 의안 : 상법 개정에 따른 정관 변경	제 22 조 (소집지) ①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22 조 (소집지) ①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② 이 회사는 상법 제542조의14 제1항에 따라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6.03.26.>	상법 개정 반영 (표준정관 준용)
	제 26 조 (의결권 등) ①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대리인은 의결권을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주주총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 26 조 (의결권 등) ①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26.>	상법 개정 반영 (표준정관 준용)
	제 30 조 (이사의 수) ①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 30 조 (이사의 수) ①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6.03.26.>	상법 개정 반영 (사외이사→독립이사 명칭 및 사외이사 의무비율 변경)
	제37조의 2 (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 ① 본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및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의 2 (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 ① 본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독립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03.26.> ② <좌 등>	상법 개정 반영 (사외이사→독립이사 명칭 변경)

구분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p>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정관은 2025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단서조항, 제10조, 제13조 3항 단서조항, 제13조의 2, 제14조 제4항, 제18조의2, 제18조의3 단서조항 개정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정관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lt;개정 2026.03.26.&gt;</p> <p>제2조(소집지와 개최방식 및 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2조, 제26조 개정·신설사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lt;신설 2026.03.26.&gt;</p> <p>제3조 (독립이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30조, 제37조의2 개정사항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 이사회 내 독립이사의 수는 &lt;법률 제20991호, 2025. 7. 22.&gt;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법률의 시행 후 1년 이내에 갖추어야 한다. &lt;신설 2026.03.26.&gt;</p>	<p>상법 개정 반영에 따른 시행일 명확화</p>
<p>제2-2호 의안 : 이사회 소집 관련 조문 정비</p>	<p>제 34 조 (이사회 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7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회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의 소집권자로 한다. ⑥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제 34 조 (이사회 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7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집통지 기간을 회일 1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lt;개정 2026.03.26.&gt;</p> <p>③ &lt;좌 동&gt;</p> <p>④ &lt;삭 제&gt; &lt;개정 2026.03.26.&gt;</p> <p>⑤ &lt;좌 동&gt;</p> <p>⑥ &lt;좌 동&gt;</p>	<p>이사회 소집통지 관련 조문 정비/보완</p>

### 제 3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이사의 수	변경 전	변경 후
4 명	20 억	좌 동

주 1) 이사의 수에 포함된 이사는 사내이사 2 명, 사외이사 1 명, 기타비상무이사 1 명 입니다.

### 제 4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감사의 수	변경 전	변경 후
1 명	2 억	좌 동